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24(월) 평창군수(환경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12. 18(목)

다. 상정일자 : 2014. 12. 18(목)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 탁 기 간 : 위·수탁일로부터 3년간
- 위탁 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 위탁사무
 -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 체험료 및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

나. 위탁시설 및 규모

- 시원지 체험관
 - 대지 4,991m²,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80.29m²)
 - 전시실(776.38), 다도체험실(138.34), 사무실(65.27), 수공간(506)

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로서의 의무
- 군수의 승인없이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권리양도 불가
-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변경 또는 신축 불가
-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 관련 발생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 자세한 위·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수탁계약 시 명기

라.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 2014. 12월
- 위탁업체 선정 : 201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공증 : 2014. 12월
- 위탁운영 : 2015. 1월 ~ 2017. 12월(3년간)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한강 시원지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 상징성 복원을 위하여 건립하는 한강 시원지 체험관의 준공에 따라,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 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임 사항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군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대상 동의안의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¹⁾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²⁾체험료 및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을 주 위탁사무로 하고 있으며,
- 위탁대상사무인 한강 시원지 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번 한강시원지 체험관의 위탁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위탁업무 처리 순서를 먼저 살펴보면,
 - ①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의 내부결재
 - ② 민간위탁동의 계획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
 - ③ 민간위탁동의안제출
 - ④ 민간위탁동의안 처리(의회-동의·부동의)

- ⑤ 예산편성(동의시)
- ⑥ 수탁자적격심사위원회 구성
- ⑦ 수탁기관선정(공개모집)
- ⑧ 위·수탁 협약 체결(협약내용 공증)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순서이나,

-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안처리(동의·부동의) 전 2015년 당초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공고를 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며,
- 또한, 위탁운영비 산출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산출 자료가 필요 하나 위탁 희망업체의 개략적인 운영비 산출내역과 평창군에서 위탁중인 인근의 위탁시설을 비교하여 운영비를 산출 하는 등 위탁운영비 재산출이 요구됨.
- 또한, 본 한강 시원지 체험관 시설은 당초 한강발원지 상징화 사업으로 월정사내에 시설물 설치와 시설설치 후 음수체험장, 물의 신비관, 오대샘터 등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직영 의견을 월정사에 문서로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관련자료등 동의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